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12
----------	---------

제출일자	2005. 3. 1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재난방재기능 통합으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역개발국에 편제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기능으로 축소, 여유기구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전환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며.
- 나. 담당관의 업무분장을 관련법규에 맞게 규칙으로 조정하고, 기구와 정원관리 기준 등의 규정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나.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로 대체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재난전담기구와 여유기구 신설 등에 따른 국별 부서 편제 및 분장사무 조정
 - ▶ 국 및 담당관단장 계서체계
 - 총 무 국 : 8개과 → 7개과 (주민자치과 폐지)
 - 계서체계 :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7개과)
 - 지역개발국 : 7개과 → 8개과 (재난안전과리과 편제)
 - 계서체계 :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녹지공원과(8개과)
 -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
 - 계서체계 :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 ▶ 분장사무 조정

- 총 무 국 : 읍면동 기능전환 등 주민자치과 업무 이관 → 지역전략사업추진단
- 지역개발국 : 재난방재·복구 및 민방위 업무 흡수
- 지역전략사업추진단 : 읍면동 기능전환업무 및 대외업무 벤치마킹, 골프장유치 등 업무

나. 담당관 사무분장을 규칙에서 정함(조례 → 규칙으로 이기)

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재규정

- 주민자치과 : 존속기한 2005. 6. 30 까지 → 폐지
- 행정타운사업소 : 존속기한 2006. 12. 31까지

4.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소요비용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05. 2. 23 ~ 2005. 3. 15)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단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단장·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면·동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및 지역개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담당관·정보담당관 및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둔다.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① 총무국에 총무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환경보호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호적, 지적, 현장생활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하수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개발국에 두는 과) ①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해양수산과·도시건축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도로교통과·수도과 및 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지역개발 및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예방·안전관리 대책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의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8.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 (여유기구) ①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외업무 벤치마킹 및 지역특화사업 등 전략사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유치, 종포스포츠파크 조성 , 각종체육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8조 (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나병·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행정에 관한사항
- ③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 (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평가
3.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4조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출장소

제17조 (설치) ① 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 (업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읍·면·동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1조 (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 제14조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담당관·과·소장” 을 “담당관, 단·과·소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과·소장” 을 “담당관, 단·과·소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담당관·과·소장” 을 “담당관, 단·과·소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과장” 을 “재난상황종합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사천시 일원
보건위생과	사천시 동금동 337-2번지	동 일원
정동면보건지소	정동면 대곡리 307-4번지	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	사남면 화전리 1316-3번지	사남면 일원
용현면보건지소	용현면 송지리 288-1번지	용현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	곤양면 성내리 194-1번지	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	곤명면 정곡리 860-8번지	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	서포면 구평리 886-11번지	서포면 일원
사천북사동 보건진료소	사천읍 두량리 210-4번지	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소곡 보건진료소	정동면 소곡리 400-14번지	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가천 보건진료소	사남면 가천리 82-5번지	우천, 능화, 가천, 중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통양 보건진료소	용현면 통양리 94-2번지	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복, 평기, 신기
축동반룡 보건진료소	축동면 반룡리 228-2번지	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검정 보건진료소	곤양면 검정리 105-3번지	홍사, 검정, 가화, 동천, 묵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본촌 보건진료소	곤양면 환덕리 986-5번지	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봉계 보건진료소	곤명면 봉계리 152번지	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은사보건진료소	곤명면 은사리 170-6번지	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금진보건진료소	서포면 금진리 275-5번지	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
서포비토보건진료소	서포면 비토리 151-8번지	비토, 선창, 염전, 아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하수도사업소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 진사지방 산업단지 9-3블럭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동림동 190번지
행정타운사업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관할구역
신수출장소	사천시 신수동 227-5번지	신수동 일원

관계법령발취

지방자치법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 ~ ② (생략)

③ 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④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 ~ ② (생략)

③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區域變更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宗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 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 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리(이하 "行政洞·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생략)

第102條 (行政機構) ①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均衡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 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化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 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第104條 (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教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研究機關 및 中小企業指導機關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

②削除 <1994.12.20>

第105條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6條 (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第7條 (保健所の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9條 (保健所の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國民健康增進·保健教育·口腔健康 및 營養改善事業
2. 傳染病의 豫防·관리 및 診療
3.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
4. 老人保健事業
5. 公衆衛生 및 食品衛生
6. 醫療人 및 醫療機關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7.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8. 應急醫療에 관한 사항
9.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保健診療員

및 保健診療所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10. 藥事에 관한 사항과 麻藥·向精神性醫藥品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精神保健에 관한 사항
12. 家庭·社會福祉施設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保健醫療事業
13.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
14.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에 관한 사항
15. 障碍人의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
16.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增進 및 이를 위한 研究등에 관한 사업

第10條 (保健支所の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の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の 支所(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농어촌법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第15條 (保健診療所の 設置·운영) ①市長 (都農複合形態의 市の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 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の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 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保健診療所に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保健診療所の 設置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 1개 실·국, 2개 과·담당관(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개 실·국, 3개 과·담당관)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략)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⑥ (생략)

제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소장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①~② (생략)

③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의2 (출장소의 설치)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③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출장소"로 본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②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 ③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2004.12.18)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시·군·구 : 1개 실과담당관(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개 실과담당관)

제26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가구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기 구 : 재난안전관리과 (1개과 신설)

□ 정 원 : 822명 → 837명(15명 증원 : 5급1, 6급2, 7급3, 8급5, 9급4)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지 급 기 준	비 고
총 계		525,785		
인 건 비	소 계	427,287	·직급별 호봉기준 - 5급 : 25호봉 - 6급 : 18호봉 - 7급 : 12호봉 - 8급 : 7호봉 - 9급 : 3호봉	·세부내역 - 붙임참조
	기 본 급	203,713		
	수 당	99,423		
	정액급식비	23,400		
	교통보조비	18,700		
	명절휴가비	25,464		
	가계지원비	42,440		
	연가보상비	14,147		
물건비	기관운영추진비등	36,390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수행활동비	
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등	62,108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